

<p>유치원(강동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6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서울고명국민학교병설유치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강동구 명일동 296-1</td></tr> </table> <p>유치원(강서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7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서울내발산국민학교병설유치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강서구 발산동 707</td></tr> </table> <p>유치원(동작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4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서울신남성국민학교병설유치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동작구 사당동 199-1</td>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>3. 서울特別市教育·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(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11時)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教育·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管理局長 柳根夏 教育廳 管理局長 柳根夏입니다.</p> <p>서울特別市教育·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먼저 制定理由를 말씀드리면 現行 各種手數料徵收條例中 地方自治法에 根據하여 制定, 運用하고 있는 條例를 하나로 統合하고, 서울特別市教育廳 및 그 奉下機關의 行政情報에 대한 一般人의 閱覽·複寫要請時 手數料를 徵收하는 根據規定을 마련하며, 또한 手數料를 徵收하는 事項을 보다 細分化하여 規定하려는 것입니다.</p> <p>두번째로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와 서울特別市中學校入學 및 中·高等學校轉·編入學配定手數料徵收條例를 각각 廢止하여 이를 서울特別市教育·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으로 統合하고, 一般人의 行政情報 公開資料의 閱覽 또는 複寫 等을 申請할 경우 그에 따른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諸證明에 관한 事項 中 手數料를 徵收하는 證明의 種類</p>	6	서울고명국민학교병설유치원	강동구 명일동 296-1	7	서울내발산국민학교병설유치원	강서구 발산동 707	4	서울신남성국민학교병설유치원	동작구 사당동 199-1	<p>를 보다 細分化하여 規定하였으며, 手數料徵收에 대한 根據法令을 目的條項에 明示하였습니다. 社會團體申告에 關한法律施行令의 改正으로 手數料 徵收根據가 없어진 서울特別市教育·學藝에 關한社會團體登記에 關한手數料徵收條例는 이를 廉止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制定根據는 地方自治法 第128條 및 第130條이며, 別添 案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</p> <p>○專門委員 金長虎 지금부터 서울特別市教育·學藝에 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.</p> <p>(報 告)</p> <p>1. 제안경위</p> <p>본 조례(안)은 199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, 동년 11월 14일 소관별 당 위원회 회부되었음.</p> <p>2. 제안사유</p> <p>현행 각종 수수료징수조례중,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·운용하고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,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·복사요청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,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 및 중·고등학교 전·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를 각각 폐지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(안)으로 통합 제정함. ○ 일반인의 행정정보 공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,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. ○ 제증명에 관한 사항중, 수수료를 징수하는 증명의 종류를 보다 세분하여 규정함.
6	서울고명국민학교병설유치원	강동구 명일동 296-1								
7	서울내발산국민학교병설유치원	강서구 발산동 707								
4	서울신남성국민학교병설유치원	동작구 사당동 199-1								

(第12回－文化教育第3次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수료징수에 대한 근거법령을 목적조항에 신설함(안 제1조). ○ 사회단체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(대통령령 제14183호 '94.3.2)으로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어진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(안 부칙 제2조). <p>4. 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 <p>5. 검토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조례(안)은 본문 7조 부칙 2조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, ○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 및 중·고등학교 전·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, 이를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징수조례(안)으로 통합제정한 것은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통합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나,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,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결정고 시 수수료 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공개 전형 응시수수료 징수조례는 통합이 되지 않고, 현행대로 존치되어 있어, 차후 이를 대 한 통합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, ○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 근거를 두고 각종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되며, ○ 안 제3조 별표에서 일반인의 행정정보 공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등은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(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)에 의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며, ○ 안 제3조 별표에서 제증명 수수료 중, 	<p>중·고등학교 학생제증명 사항에 대하여 학적(입학)증명, 휴학(복학)증명, 생활기록부(학적부)증명과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증명, 학비감면 증명, 미 확정체권 양도에 관한 증명, 보증금 납부(예치)증명, 공유재산에 관한 증명 등, 증명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였는 바, 이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,</p> <p>○ 안 부칙제2조(적용범위), 제4조(2통이상의 수수료등), 제5조(면제), 제6조(징수방법), 제7조(징수시기 및 반환)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참고하여 규정하였다고 생각되며,</p> <p>○ 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1994년 1월 7일과 1994년 3월 2일에 각각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이에 대한 조례가 존치되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, 사회단체의 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사회단체의 본부 및 지부의 설립신고, 변경신고 및 해산시에 수수료가 없음으로 조속히 동조례를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.</p> <p>○ 따라서, 서울특별시교육·학예에관한 각종수수료징수조례(안)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, 본 조례(안)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</p> <p>.....</p> <p>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詰鎬 그러면 本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教育·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에 대해서는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. 委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시겠습니까?</p>
--	---